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8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5. 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와 해당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어선의 소유자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연근해어업자 등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의견 요지]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정비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의결을 전제[1]로 해당 법률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1) 본 개정안은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나. 검토의견

□ 현행 「어선법」(이하에서 “현행법”이라 함) 제5조의2는 어선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에 종사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는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어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3조제1항제3호).

□ 그런데 동 법안과 함께 제출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이하 ‘연근해어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와 해당 의무 위반 시의 벌칙이 규정됨에 따라 연근해어업자등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형벌을 중복으로 부과받게 됨.

[어선법 및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비교]

어선법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	**제8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항행(航行)하거나 조업(操業)을 할 때에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작동시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선법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근해어업자"라 한다) 2.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이하 "어획물운반업자"라 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

이에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 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동일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중복 부과를 피하려는 취지로 이해됨[2].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상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행위'로 사실상 동일함에도, 처벌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현행법)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의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하고 있음.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비교]

구분	어선법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법률상 위치발신장치 작동 대상	(어선법 제5조의2) ○ 어선법 제2조제1호 가목,나목의 어선 -어업(양식업포함),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종사선박 -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 종사 선박	(제8조제1호,제2호) ○ 연근해어업자 ○ 어획물운반업 종사자
처벌규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안 내용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는 어선법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